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46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 윤준병ㆍ이기헌ㆍ정동영

황명선 • 박희승 • 이춘석

안호영 • 박민규 • 조계원

허종식 • 민형배 • 서영교

문대림 · 김윤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 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 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

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2024년"을 각각 "2029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② (생 략)	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③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	
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1
경우에는 <u>2024년</u> 12월 31일까	<u>2029년</u>
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	2
는 경우에는 <u>2024년</u> 12월 31	<u>2029년</u>
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	
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	4
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	

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⑤ (생략)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 (생 락)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

000014
<u>2029년</u>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
면) ①
2029년

1. · 2. (현행과 같음)
③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 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 고, 2021년 1월 1일부터 <u>2024년</u>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 의 75를 경감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
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
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u>2029년</u>
·.
4
<u>202</u>
9년